#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30

발의연월일: 2020. 8. 10.

발 의 자 : 양금희 · 추경호 · 윤한홍

이종배 • 윤두현 • 전주혜

이명수 · 김형동 · 곽상도

지성호 · 서병수 · 김영식

김도읍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 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 왔음.

그런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미비점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사업범위에 경력단절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센터 명칭이 경력단절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 수행 범위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

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와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정책의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제7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

#### 법률 제 호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와 고

제12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령"을 "공동부령"으로 한다.

용노동부의 공동부렁(이하 "공동부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 <u>광역시장</u> ·도지	② <u>광역시장·특별자</u>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u> 치시장</u>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	
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	
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
동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	동 실태조사) ① <u>여성가족부장</u>
<u>관</u> 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	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	
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	
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②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u>여성가족부령</u> 으로 정한다.	<u>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u>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u>한다)</u>

제12조(경력단절 예방) <u>여성가족</u>	제12조(경력단절 예방) <u>여성가족</u>
<u>부장관</u> 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u>여성가족부령</u> 으로 정하는 기관	<u>공동부령</u>
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	
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	
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13조( <u>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u> 의	제13조( <u>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u> 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	지정) ①
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	
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	
한다) 단위의 <u>경력단절여성지</u>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u>원센터</u> (이하 "지원센터"라 한	
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	제13조의2(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
<u>센터</u>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	<u>센터</u> ) ①
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	
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	
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 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